
복합지원 2.0, 더욱 든든해지겠습니다

-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및 고도화 방안 -

2024. 12. 18.

관 계 기 관 합 동

순 서

I. 검토 배경	1
II. 복합지원 성과('24년)	2
III. 복합지원 고도화 방안(복합지원 2.0)	5
1. 4대 중점 개선방안	6
2. 旣발표 과제(불법사금융 관련) 조기추진	9
IV. 추진 일정	10

I. 검토 배경

□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복합적인 양상

- 자산·소득 대비 부채가 과중*한 상황에서, 고용·주거 불안 등이 겹치며 상환능력(소득 수준) 개선에도 한계

* 순자산이 음(-)으로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부채상환이 어려운 상황. 한편, 금융접근성 제한 등으로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일반차주 대비 소폭 양호.

【표1】 서민금융 이용자 경제여건(만원, %)

구 분	부 채(a)	자 산(b)	b-a	연소득(c)	a/c	정규직 비율	자가거주 비율
서민금융 이용자 ^[1]	5,227	897	-4,330	2,727	1.92	56.1	12.7
일반국민·차주 평균 ^[2]	10,241	22,368	12,127	4,920	2.08	63.0	57.5

* [1] 서민금융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등(서민금융진흥원, '23년말 기준)

[2] 가계금융복지조사·경제활동인구조사(근로형태별 부가조사) 등 활용 추정치(통계청, 통계별 최신통계 기준)

□ 정부는 취약계층의 복합적 어려움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 추진

- 다만,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산재·공급*되고 있어, 정책 수요자가 체감하는 효용* 및 재정집행의 효과성 저하

* [예] 금융지원 → 서민금융센터 / 고용지원 → 고용복지*센터 / 복지지원 → 지자체 등

※ 현장의 목소리

- 서민금융센터 이용자(50대 싱글맘): “정부 지원이 복잡하고 지원을 받을 때마다 비슷한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, 지원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됨”

- 이에, 정부는 다양한 금융·고용·복지 서비스 등을 수요자가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, 서민금융센터에서 원스톱 제공하는 **복합지원** 개시([‘24.1월] 부분개시 → [6월] 전산정비 후 전면 개시)

➔ 복합지원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, 고용률 제고,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핵심 경제정책

- 1주년을 맞아 성과를 점검하고, 추가 고도화 방안 마련

II. 복합지원 성과('24년)

◇ **고용·소득 취약계층** 중심으로 복합지원이 집중 제공됐고, **금융여건**(고금리 대부잔액, 연체기록 등) **개선**에도 기여

① **연계자 수**: '23년 대비 **44.5%(+25,616명, '24.11월 기준) 증가**

○ 특히, 서민금융센터(금융위)-고용복지⁺센터(고용부)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이 도입^{*}되면서, **금융-고용 연계 급증(+445%, +14,318명)**

* [금융-고용] '24.3월 신규 도입 / [금융-복지] '18.7월 既도입

【표2】 금융-고용-복지 연계자 수(명)

'23년	'23년 계	1Q	2Q	3Q	4Q
고용	3,218 ('23.6월 연계 개시)	-	10	874	2,334
복지	43,100 ('18.7월 연계 개시)	10,043	14,387	9,143	9,527
합계	46,318	10,043	14,397	10,017	11,861
↓					
'24년	'24년 계	1Q	2Q	3Q	4Q(~11월)
고용	17,536 (+14,318, +445%)	2,316	5,475	5,450	4,295
복지	54,398 (+11,298, + 26%)	13,126	11,942	17,223	12,107
합계	71,934 (+25,616, + 55%)	15,442	17,417	22,673	16,402

② **연계 대상자**: **고용·소득 취약계층**에게 보다 집중적인 지원

○ 심층상담·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, 무직·비정규직, 저소득자(年2,500만원 이하) 등 **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^{*}**

* [금융-고용] 무직·비정규직 비율 +27%p, 저소득층 비율 +10%p

[금융-복지] 무직·비정규직 비율 + 6%p, 저소득층 비율 동일(77%의 높은 수준 유지)

【표3】 금융-고용-복지 연계자 중 취약계층 비중

구 분	무직·비정규직 비율		저소득자 비율	
	복합지원 前 [*]	복합지원 後 [*]	복합지원 前 [*]	복합지원 後 [*]
금융-고용	56% (1,298명)	83% (12,604명)	75% (1,734명)	85% (12,858명)
금융-복지	62% (15,593명)	68% (19,967명)	77% (19,382명)	77% (22,650명)

* [금융-고용] '24.3월말 본격 개시 → '24.1~3월을 복합지원 前, '24.4~11월을 복합지원 後로 분류
[금융-복지] '24.6월말 본격 개시 → '24.1~6월을 복합지원 前, '24.7~11월을 복합지원 後로 분류

③ 정책 실효성: 수혜자의 금융여건 개선에 가시적인 기여

○ 고금리 대부잔액, 연체자 비중 등 금융여건 전반적으로 개선

- 특히, 금융·고용·복지 모두 복합지원 받을 경우 금융여건이 더욱 개선*되며,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에 상당 수준 기여

* 대조군(非복합지원 등) 대비 고금리 대부잔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했고, 연체자 비중 및 채무조정 실효자 비중은 크게 낮은 수준

【표4】 복합지원 수혜자 금융여건 변화

구 분	非복합지원	복합지원		
	금융 단독	금융-고용	금융-복지	금융-고용-복지
고금리 대부잔액*	-10.9%	-13.3%	-10.8%	-11.5%
3회 이상 연체자 비중	8.1%	2.5%	6.6%	2.2%
채무조정 실효자** 비중	2.8%	0.3%	2.0%	0.1%

* 대부업권 대출액, 저축은행 신용대출액, 장기카드대출액 등(평균금리 약 18%/年 이상)

** 변제 계획 3개월 이상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

④ 정책 만족도: 만족도가 높지만, 전달경로·혜택 확대 등 개선요소 상존

○ 이용자의 81.2%가 복합지원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, 91.0%는 재이용 의사 표시(이용자 2,222명 대상 설문조사)

【표5】 복합지원 이용자 만족도, 재이용 의사(명)

구 분	매우 긍정	긍 정	보 통	부 정	매우 부정
정책 만족도	1,145 (51.5%)	660 (29.7%)	336 (15.1%)	53 (2.4%)	28 (1.3%)
재이용 의사	1,321 (59.5%)	702 (31.6%)	165 (7.4%)	22 (1.0%)	12 (0.5%)

○ 다만,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, 복합지원 전달경로 확대*, 복합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정책 확대 필요성 등 제시

* 현재 복합지원 정책은 서민금융센터·고용복지+센터(온·오프라인)를 통해서만 제공

➡ 이용자 건의사항 및 자체 진단(유관기관 실무회의 등)을 토대로, 「복합지원 고도화 방안(복합지원 2.0)」 마련

참고1

복합지원 주요 통계 (단위: 명)

□ 전체 실적

구 분	'24.1Q	2Q	3Q	4Q(~11월)	소 계
총 상담자	146,931	140,187	144,703	99,354	531,175
금융지원 인원	89,237	92,244	85,198	56,048	322,727
고용 연계 인원	2,316	5,475	5,450	4,295	17,536
복지 연계 인원	13,126	11,942	17,223	12,107	54,398
동시 ^{고용+복지} 연계 인원	6	1,021	2,567	1,939	5,533

□ 고용 연계 인원 주요 특징

구 분	'24.1Q	2Q	3Q	4Q(~11월)	소 계
고용 연계 인원	2,316	5,475	5,450	4,295	17,536 (100.0%)
직업별					
무직·비정규직	1,298	4,130	4,758	3,716	13,902 (79.3%)
정규직 등	1,018	1,345	692	579	3,634 (20.7%)
소득별					
2.5천만원 이하	1,734	4,718	4,613	3,527	14,592 (83.2%)
2.5천만원 초과	130	440	582	529	1,681 (9.6%)
기타(무응답 등)	452	317	255	239	1,263 (7.2%)

□ 복지 연계 인원 주요 특징

구 분	'24.1Q	2Q	3Q	4Q(~11월)	소 계
복지 연계 인원	13,126	11,942	17,223	12,107	54,398 (100.0%)
직업별					
무직·비정규직	7,995	7,598	11,806	8,161	35,560 (65.4%)
정규직 등	5,131	4,344	5,417	3,946	18,838 (34.6%)
소득별					
2.5천만원 이하	10,083	9,299	13,461	9,189	42,032 (77.3%)
2.5천만원 초과	1,619	1,474	2,187	1,634	6,914 (12.7%)
기타(무응답 등)	1,424	1,169	1,575	1,284	5,452 (10.0%)

Ⅲ. 복합지원 고도화 방안(복합지원 2.0)

< 기본 추진방향 >

◇ 보다 많은 분들에게 보다 두터운 복합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, 4대 중점 개선방안 추진

- ① (유입경로 확대) 서금센터·고용복지+센터 등 공공기관에 더해,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복합지원 유입경로 신설
- ② (연계분야 확대) 금융-고용 연계를 강화하고, 주거(특례전세보증) 및 복합지원 가능성 높은 직종(예술인) 관련 복합지원 신설
- ③ (대상자 정밀 선별) 고객이 수혜 가능한 복합지원 서비스를 신속·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, 공공마이데이터 활용
- ④ (상담현장 역량 강화) 현장 인력이 보다 전문적·적극적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및 우수직원 표창 등 도입

※ 아울러, 보다 적극적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, 지난 6월 既 발표한 불법사금융 관련 과제 조기추진('25.下 → '25.1분기)

【복합지원 4대 중점 개선방안】

	현 행	개 선
① 유입경로 확대	▷ 공공기관을 방문해야만 복합지원 수혜 가능	▷ 민간 금융회사 대출 거절자 등도 복합지원 유입 가능
② 연계분야 확대	▷ 금융위·고용부 유관기관 일부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복합지원 서비스 연계 중	▷ 고용 분야(근로복지공단) 신규 연계 ▷ 현장수요가 큰 주거지원(주공공), 직종 단체(예술인재단) 신규 연계
③ 대상자 정밀 선별	▷ 고객 진술에 근거하여 상담 진행 및 복합지원 제공	▷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담대기일수 단축 및 실제 수혜 가능한 고용·복지제도 정밀 지원
④ 상담현장 역량 강화	▷ 고난이도 업무임에도 전담 인력 부재 및 업무 과중	▷ 전담인력 확충 및 우수직원 표창 등을 통한 사기진작

가. 유입경로 확대

은행·저축은행 대출 거절자 등이 복합지원 서비스로 유입되는 경로 마련

① 민간 금융회사 이용자 대상 복합지원 안내('25.1Q)^{금융위}

- (현행) 복합지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공공기관(서민금융센터 [이하 '서금센터']·고용복지+센터 등)에 온·오프라인 방문 필요
- 은행·저축은행 등에서 대출거절된 고객 등은 복합지원 수혜 가능성이 높음에도, 별도로 서금센터 등 공공기관에 방문하지 않는 한 복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

➔ (개선) 민간 금융회사에서 발견한 복합지원 수혜 예상자 ([예] 소득이 낮은 신용대출 거절자 등) 대상 복합지원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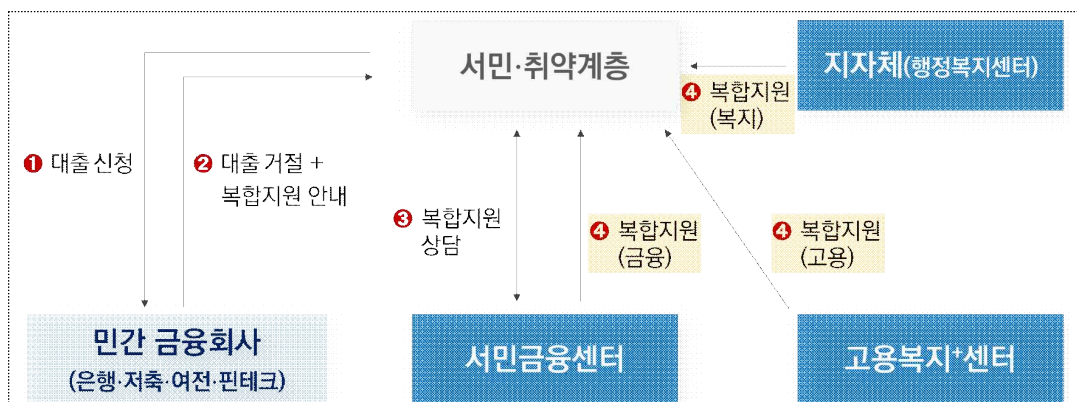
- (참여업권) 국민 대상 접점이 넓은 은행 + 서민·취약계층 이용도가 높은 저축은행·여전사·핀테크* ☞ 지속확대 검토

* 대출비교 플랫폼 6개사(토스, 네이버, 카카오뱅크, 카카오페이, 핀다,뱅크샐러드)

- (안내방법) 대면창구 안내 및 홍보물 배포* + 비대면복합지원 관련 웹페이지 링크 등을 담은 문자·이메일 발송

* 특히, 서민·취약계층의 이용도가 높은 저축은행·여전사(희망업체 중심)의 경우, 복합지원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직원 대상 교육(복합지원 상담 현장방문 포함)도 진행

【민간 금융회사 복합지원 참여 흐름도】



나. 연계분야 확대

현행 금융-고용 연계를 강화하고, 주거 지원 등 신규 분야 연계·안내

② 금융-고용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규 연계('25.3Q) 금융위·고용부

- (현행) 고용부 유관기관 중 고용복지+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제도* 중심으로 금융-고용 복합지원 서비스 제공

* 국민취업지원제도, 내일배움카드, 청년도전지원사업 등

➡ (개선)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도 복합지원에 신규 참여

- (금융 → 고용) 직업훈련 중 생계비지원이 필요한 고객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대부* 연계

* 중위소득 80% 이하 + 장기 직업훈련자 대상 생계비대부(금리 1%, 1천만원限) [참고2]

- (고용 → 금융)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 중인 연체자(근로자 신용 보증지원사업 대위변제자 등)가 희망 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연계

③ 신규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 관련 신규 연계('25.2Q) 금융위

- (현행) 주금공은 서민금융·채무조정 이용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전세자금보증* 제공 중([서민금융] '18~ / [채무조정] '08~)

*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「연소득 4,500만원 이하 + 서민금융상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상환한 자」 등에 대해 취급요건을 완화한 전세자금보증상품(최대 8천만원) [참고3]

- 다만, 서금센터-주금공 간 전산연계 부재로, 특례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면 고객 스스로 요건 충족을 수기증명해야 함
☞ 번거로움으로 이용 저조(최근 5년['20~'24년] 간 연평균 291건)

➡ (개선) 서금센터-주금공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해, 특례 요건 충족 증빙자료 기관 간 자동 송수신 및 서금센터에서 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가(假)조회 기능 도입

4 신규 서금센터-직종단체 간 상호안내 확대('25.1Q) 금융위·문체부

- (현행) 일부 직종은 각 직종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중

- 단, 해당 단체와 서금센터 간 연계·안내 부재*로, 고객이 모르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당

* '24년말 현재 서금센터는 직종 단체 중 소상공인지원센터(중기부)와 연계 시스템 운용 중

➔ (개선) 복합지원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추정*되는 예술업 관련 단체(한국예술인복지재단)와 지원사업 상호안내** 강화

* 예술 종사자 평균 월임금총액은 258.4만원으로 18개 업종 중 17위이며, 비정규직 비중 59.7%로 전체 평균(37.0%) 대비 높은 수준('23)

** [서금센터→예술인재단] 재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·전세자금대출 안내 강화 [참고4]
[예술인재단→서금센터] 서금센터의 정책서민금융상품·채무조정 지원 안내 강화

- 성과를 보아가며, 여타 직종단체와 협업 확대 추진

다. 대상자 선별 강화

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,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합지원 서비스 제공

5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복합지원 대상 정밀 선별('25.4Q) 금융위·행안부

- (현행) 주관적인 고객 진술에 의존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, 연계 가능한 서비스 판별이 어렵고*, 상담시간도 장기화**

* [예] 서금센터 상담 결과 고객 A씨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판단 → A씨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 지급 지자체에 요청(연계) → 지자체 파악 결과 대상자 요건 미비로 판단

** 서금센터 상담대기일수: ['24.2Q] 8.6일 → ['24.3Q] 11.3일(+2.7일)

➔ (개선)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 도입

- 상담 전 본인정보제공 동의*된 고객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토대로 연계 가능한 서비스 후보군을 자동 생성하고, 실제 상담 시 해당 후보군을 중심으로 신속·정확한 상담·연계

* 상담 실시 전 서금센터 시스템을 통해 사전 동의 절차가 진행(시스템 내 본인정보 제공 동의 창 발생 등)되도록,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기능 구현

라. 상담현장 역량 강화

상담현장 인력·사기 제고 등으로, 원활한 복합지원 서비스 공급 역량 확보

⑥ 상담원 **인력 확대, 사기진작 및 전문성 향상**(‘25.1Q) 금융위·고용부

- (현행) 복합지원 업무는 타업무 대비 난이도가 높은 것*으로 평가되나, 인력이 부족**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재

* 서금센터 전문분야인 금융분야 외에 고용·복지제도도 별도로 숙지하는 데 어려움 호소

** 전국 50개 서금센터 중 38개(76%)의 복합지원 상담원(서민금융진흥원 소속) 1인 이하

➔ (개선) 적극적·전문적 업무 유도를 위해, 상담인력 증원*, 우수직원 표창** 및 복합지원 전문가 교육과정 신설

* 서민금융진흥원·신용회복위원회 각 10명 이상 증원

** 금융의 날 포용 부문(금융위), 국민취업제도 우수사례 공모전(고용부), 복합지원 우수직원 포상(서민금융진흥원·신용회복위원회) 등

2 | 既 발표 과제 (불법사금융 관련) 조기추진

⑦ 서금센터-금감원 **불법사금융 관련 협업 조기추진**(‘25.1Q) 금융위·금감원

- (현행)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, 서금센터-금감원 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산연계 예정([’24.6월] 방안 발표, [’25.4Q] 연계완료)
- 다만, 고금리 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 유인이 커지고 있어, 전산연계 전이라도 서금센터-금감원 간 협업 조기추진 필요

➔ (개선) 전산개발 전까지 서금센터 방문 고객에게 불법사금융 관련 금감원 신고절차 안내 등을 강화(표준화된 업무 메뉴얼 도입 등)하고, 불법사금융 관련 금감원 조직 확대*

*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 전담팀 신설, 금감원 콜센터 인력 증원 등

IV. 추진 일정

◇ 기관별로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, '25년말 관계기관* 공동으로 복합지원 성과점검 및 개선 방안 발표

* 금융위, 행안부, 복지부, 고용부, 금감원, 서금원, 신복위 등

정책 과제	시행 시기
1. 4대 중점 개선방안	
가. 유입경로 확대	
① (민간 유입) 민간 금융회사 이용자 대상 복합지원 안내	'25.1Q
나. 연계분야 확대	
② (고용연계 강화)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사업 연계	'25.3Q
③ (주거지원) 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 연계	'25.2Q
④ (직종단체와 협업)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과 상호안내 개시	'25.1Q
다. 대상자 선별 강화	
⑤ (공공마이데이터)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	'25.4Q
라. 상담현장 역량 강화	
⑥-1 (사기 진작) 복합지원 상담 인력확충 및 우수직원 표창 도입	'25.1Q
⑥-2 (전문가 양성) 복합지원 전문가 교육과정 신설	'25.1Q
2. 既발표 과제(불법사금융 관련) 조기추진	
⑦-1 (안내 강화) 서금센터→금감원 신고절차 안내 강화(업무 메뉴얼)	'25.1Q
⑦-2 (조직 확대) 불법사금융 전담팀 신설, 콜센터 증원 등	'25.1Q

□ 사업 개요

-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(대출)하는 사업

* [재원] 일반회계, 고용보험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/ [’24년 예산] 454억원

※ 근로복지공단 개요

- ◇ (목적) 산재·고용보험 운영 및 근로복지사업 수행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’95 설립)
 ※ 공단 본부 울산시 소재, 지역본부 및 지사 전국 64개
- ◇ (주요업무) 고용·산재보험 관리, 근로자 복지 사업 수행 등
- (고용·산재보험) 보험 가입, 보험료 납부·징수 업무 등 수행
 - (산재보상) 산재 여부 결정 및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(요양급여, 휴업급여 등) 지급, 의료 서비스 등 지원
 - (근로자복지) 근로자 대상 융자 사업, 신용보증 등 지원
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구분		직업훈련 생계비대부
내용	대출 한도	최대 1,000만원 / 월 최대 200만원 (단, 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,000만원)
	금리	1%
주요 조건	대상	(고용)취약계층* * 비정규직 근로자: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기간제/단시간/파견/일용 근로자 실업자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무급휴직자: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을 받지 않고 휴직 중에 있는 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: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
	소득	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중위소득 80% 이하 (단,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,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,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 완화)
	기타 조건	지정 직업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이수

□ 사업 개요

○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서 시행되는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 제공 중(일반전세자금보증, 한도 4억원)

- 특례전세자금보증*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제공되는 보증으로, 일반보증보다 보증한도는 낮으나 신용평가(CSS) 생략 등 취급 요건 완화

* 실적(서민금융+신용회복 특례, 건): ['20] 433 ['21] 256 ['22] 237 ['23] 279 ['24.11] 227
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구분		일반전세자금보증	특례전세자금보증	
			정책서민금융이용자 (서금융 이용자)	신용회복지원자 (신복위 등 이용자)
내용	보증 한도	최대 4억원	최대 8천만원	최대 6천만원
	보증 비율	90%	100% (단, 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은 90%)	100%
	보증 료율	연 0.02%~0.40%		
주요 조건	대상	- (전세자금대출자)	연소득 45백만원 이하 +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(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 또는 완제한지 4년 이내)	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 ①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 혹은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 ② 신용회복기관에 변제금 12회차 이상 납입 ③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
	신용 평가 (공사 자체)	진행	생략	생략
	임차 보증금	7억원 이하(단, 수도권외 가구는 5억원 이하)		
	주택 보유 여부	본인·배우자 합산 1주택 이하		

참고4

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 개요

□ 사업 개요
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 대출하는 사업

* [재원] 복권기금 / ['24년 예산] 189억원

※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요

- ◇ (목적) 예술인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예술발전에 기여(「예술인복지법」에 따라 '12 설립)
※ 재단 사무실 서울시 소재, 별도 지부·지점 없음
- ◇ (주요업무) 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, 보험지원 및 자금지원 등
 - (예술활동증명) 11개 분야(문학·미술·음악·연예·영화 등)에서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사업
 - (4대보험) 산재보험(가입)·고용보험(상담·안내) 및 국민연금(보험료) 지원
 - (활동준비금지원·생활안정자금용자)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및 생활안정·전세자금 대출

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구분		생활안정자금대출	전세자금대출
내용	대출 한도	최대 7백만원 (단, 긴급생활자금 용도는 5백만원)	최대 1억원 (단,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	금리	2.5%	1.95%
주요 조건	대상	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보유자	
	소득	긴급생활자금 용도의 경우, 소득 2,000만원 이하 ※ 他 용도는 소득 요건 없음	직전년도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%('24년 기준 3,209만원) 이하
	기타 조건	- 용도(결혼자금, 의료비, 부모요양비, 장례비, 긴급생활자금)*에 부합하게 활용 * 한 가지 용도로만 대출 가능 [[예] 결혼자금으로 3백만원 대출 후, 의료비 용도로 4백만원 대출 불가]	- 임차전용면적 85㎡ 이하 (도시지역이 아닌 읍면·동은 100㎡ 이하) 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미소유 (재산세 '주택' 항목 과세자 제외)